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5602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한혜윤]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 2022. 4. 7.

판결 선고 2022. 6. 9.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50,106원 및 그중 234,349,557원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10. 12.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7.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피고 C의 소외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167,707,736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7. 1.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29,5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18. 1. 12.까지(이후 2020. 1. 10.까지로 최종연장되었다)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피고 A은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가 은행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추가보증료, ③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제10조). 그리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2020. 1. 14. 피고 A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5. 20.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234,349,5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20. 5.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7%이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추가 보증료는 1,716,530원이며, 원고는 피고 A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484,019원을 지출하였다[합계 237,550,106원(= 234,349,557원 + 1,716,530원 + 1,484,019원)].

나. 피고 C의 전세권설정계약

1) 피고 B은 피고 C과 1991. 8. 1.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1194(본소), 2018드합31200(반소) 이혼 등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19. 4. 2. 위 피고들은 이혼하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되(200,000,000원은 2019. 6. 30.까지, 나머지 200,000,000원은 2024. 3. 31.까지 각 지급), 그 외에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확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2)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7. 피고 B과 체결한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9. 11. 27.부터 2021. 11. 26.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6140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1) 피고 B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인 2019. 11. 27. 기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인 평택시 F 대 615m², G 도로 167m², H 대 106m²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 2020. 6. 1. 기준 가액은 합계 874,334,360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액 289,117,360원 + 나머지 토지 가액 585,217,000원)이다.

2)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 소극재산으로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452,973,854원(원금 기준)1), ② 주식회사 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원, ③ J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0,709,522원, ④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금채무 127,585,813원, ⑤ 피고 C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 400,000,000원 등 합계 2,006,269,189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관련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과

피고 B이 소유한 다.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인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21. 12.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세권자인 피고 C에게 167,707,73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34,349,557원, 추가보증료 1,716,530원, 법적절차비용 1,484,019원 합계 237,550,106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34,349,557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20. 5. 20.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된 2020. 10.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14.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2020. 5.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34,349,557원을 대위변제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237,550,106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합계 874,334,36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최소 2,006,269,18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처럼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채권을 정당히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 B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에서 재산분할방법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을 예정한 적이 없으므로 위 계약 체결행위는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유사의 권리를 가진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

1)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67,707,736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찬우

판사임현수

판사박진옥

별지

1) 피고 B은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17. 3. 3.자, 2012. 1. 20.자, 2014. 4. 25. 자, 2016. 9. 26.자, 2017. 3. 3. 자, 2017. 6. 20.자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자 2020카단802644결정, 갑 제4호증 갑구 순번 3번 가압류 기입등기 참조). 위 각 대출채무(원금)의 합계는 1,017,973,854원이다(갑 제9호증의 1). 한편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6. 8. 2. 접수 제26502호로 마친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3,8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135,000,000원이고, 같은 등기소 2016. 8. 2. 접수 제26504호로 마친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300,000,000원이다.

합계: 1,017,973,854원 + 135,000,000원 + 300,000,000원 = 1,452,973,854원